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79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 민형배·김문수·주철현

이성윤 • 정동영 • 김동아

박지원 • 양부남 • 이개호

소병훈 · 김현정 · 박균택

문정복・손명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 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

인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2 등).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을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유가족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으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신원 확인, 비상물품 전달 등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75조의5에 따른 유가족전담공무원을 두는 때에는 유가족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구성하여야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5조의5(유가족전담공무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 족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하 이 조에서 "유가 족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유가족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 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 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신원 확인, 비상물품 전
	달 등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유가족통합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
	우 제75조의5에 따른 유가족전
	담공무원을 두는 때에는 유가
	족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
	하여야 한다.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u>운영</u>	<u>④</u>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u>파견</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및 유가족통합지원센터 구성・
령령으로 정한다.	<u> 순</u> 영
<u><신 설></u>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정신
	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효
	<u>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의</u>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u>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신 설>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의5(유가족전담공무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 (이하 이 조에서 "유가족전담 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유가족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 항
 - 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 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

얼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 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